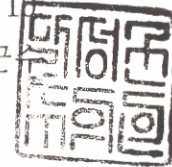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943
----------	-----

제출일자 : 2013. 10.

제 출 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달성군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독서증진 활동과 지식·정보제공, 문화·예술진흥 및 평생학습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도서관 관리 및 운영(제7조~제19조)
- 나. 도서관 자료관리(제20조~제22조)
- 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제23조~제28조)
- 라. 도서관 위탁운영(제29조~제3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27조, 제29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04조, 제22조
- 나. 예산조치 : 2014년 본예산에 반영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세 출		498,524	556,353	556,353	556,353	556,353	2,723,936
인건비		188,889	213,810	213,810	213,810	213,810	1,044,129
사무관리비		108,965	114,739	114,739	114,739	114,739	567,921
공공운영비		62,057	119,644	119,644	119,644	119,644	540,633
행사운영비		11,400	1,400	1,400	1,400	1,400	17,000
일반보상금		10,000	13,000	13,000	13,000	13,000	62,000
여비		1,620	2,160	2,160	2,160	2,160	10,260
업무추진비		2,700	3,600	3,600	3,600	3,600	17,100
자산취득비		82,893	53,000	53,000	53,000	53,000	294,893
민간위탁금		30,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준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2) 규제심사 : 해당사항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8. 30. ~ 9. 23.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불임 참조

- 정밀점검 1,000,000원 × 1회 = 1,000,000원
- 월점검대행 200,000원 × 12회 = 2,400,000원
- 상호대차 차량 유류비 1,780원×250ℓ×12월 = 5,340,000원
- 도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700,000,000원 × 7% = 49,000,000원
- 기타 : 8,904,000원

○행사운영비 : 1,400,000원

- 도서관 주간행사 700,000원×1회
- 독서의 달 행사 700,000원×1회

○일반보상금 : 13,000,000원

- 자료정리자원봉사자 실비보상 : 10,000원×10명×10일×12월=12,000,000원
- 작가초청강연회 보상금 : 500,000원×1명×2회=1,000,000원

○여비 : 2,160,000원

○업무추진비 : 3,600,000원

○자산취득비 : 53,000,000원

- 도서구입
- 정기도서 50,000권×10,000원=50,000,000원
- DVD 100종×30,000원=3,000,000원

○민간위탁금(청소용역비) : 35,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반영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별첨

6. 작성자 : 정책사업단 정책사업과 교육정책담당자 황외란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 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달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25-2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와 도서관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내의 교육·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로부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시행

나. 추계 결과 : **합계 연556,353천 원**

○인건비 213,810,000원(6名)

- 4급(팀장, 6급 상당) 2,200,000원×1명 = 22,000,000원
- 5급(사서, 8급 상당) 18,000,000원×1명 = 18,000,000원
- 6급(행정전산 시설 사서, 9급 상당) 14,000,000원×4명 = 56,000,000원
- 제 수당(기본급의 40%) 88,260,960원

○사무관리비 114,739,000원

- 정기간행물 구독료 : 4,980,000원
- 도서 정리용품 등 : 8,200,000원
- 도서 훼손 수리용품 : 1,950,000원
- 도서관 회원증 관련용품 : 21,300,000원
-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 41,200,000원
- 도서관 운영 관리 : 26,709,000원
- 기타(도서관소식지, 독서통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수당) : 10,400,000원

○공공운영비 : 119,644,000원

- 전기요금 2,000,000원 × 12월 = 24,000,000원
- 전화요금 20,000원 × 5회선 × 12월 = 1,200,000원
-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60,000원 × 12월 = 1,920,000원
- 상하수도요금 340,000원×12월 = 4,080,000원
- 인터넷회선사용료 1,000,000원 ×12월 = 12,000,000원
- 문자사용료 : 30원×15,000건×12월 =5,400,000원
- 도서관 협회비 800,000원 × 1식 =800,000원
- 전기안전관리자대행 수수료 300,000원×12월 = 3,600,000원
- 소방시설유지비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2.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다른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행사의 주최 및 장려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도서관 등의 연계)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분관 등의 독서시설에 대해 도서관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설립·운영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협력할 수 있다.

제6조(독서진흥) ① 군수는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서관구입비와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7조(이용시간 및 휴관)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3월 ~

○ 주요내용

- 군민들의 다양한 정보이용 및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달성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

2. 비용발생 요인

- 인건비
-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 행사운영비
- 일반보상금
- 여비
- 업무추진비
- 자산취득비
- 민간위탁금

3. 관련조문

: 제4조(기능 및 업무), 제5조(도서관 등의 연계), 제6조(독서진흥), 제9조(조직 및 인력)
제18조(문화강좌), 제28조(수당 등), 제29조(운영의 위탁)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도서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조직 및 인력)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과 인력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아동은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와서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③ 도서관 자료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한다.

제11조(대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고서, 희귀자료, 귀중자료
2. 각종 간행물 및 참고자료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DVD, 음반CD 등 비도서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2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에는 시청각실 등 부속시설을 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들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④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부속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등의 내부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①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감면범위, 사용료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 등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경우에는 별표2와 같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입관의 제한) 군수는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방해가 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자

3.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시설(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별표1】 부속시설 사용료 기준표(제12조 관련)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문화강좌실 (기본사용료)	1회사용 (3시간 기준)	40,000원	· 기본 사용시간 1시간 초과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본료의 50%를 받는다. · 1일사용 가능시간대 : 09:00~18:00 ※ 단, 일과 후 사용은 50%가산함
전 시 실	1회사용 (1일 기준)	20,000원	
빔프로젝트		10,000원	·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 사용 단가임.
음향장비		10,000원	
냉·난방		2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2】 사용료 기준표(제15조 관련)

구 분	사용료	비 고
A4, B5 규격의 단면복사	매당 30원	
B4, A3 규격의 단면복사	매당 40원	
A4 규격의 단면인쇄	매당 50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문화강좌)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제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료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자) 군수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도서관 자료관리

제2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 등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낙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돌려줄 수 있다.

제21조(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문화공간, 사립문고 및 유관단체 등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문서로 명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도서관을 위탁·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무는 도서관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6장 보 칙

제3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내지 제35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하여 다른 도서관, 문고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4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구성시 어느 한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 내 문화계·교육계·도서관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된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

2. 수탁기관이 위·수탁운영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도서관 설립취지에 위반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2조(반환 및 기부채납) ① 수탁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자료, 시설,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개시일 전 3개월까지 도서관의 합리적 운영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 등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일 전 15일까지 수탁기관에 승인통지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4월 말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도서관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한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업무를 태만히

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위탁운영

제29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위탁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군에

서 출연하여 문화예술진흥활동 지원 및 도서관 운영·관리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및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문화예술진흥활동 및 도서관 운영·관리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1조의 위탁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수탁기관에 도서관 관리·운영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제4조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 시설, 지원받은 예산 등을 수탁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규칙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30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